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5.

발 의 자 : 이달희 · 강선영 · 김상훈
고동진 · 강명구 · 김예지
김미애 · 김정재 · 이진숙
주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고, 투표사무원·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, 각급학교의 교직원, 은행 직원 등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.

투·개표사무원 위촉 현황을 보면,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비율은 약 46%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임.

높은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직원이 담당하여야 하며, 불가피하게 외부의 사람을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,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하

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, 투표관리관 등 투개표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지원받도록 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가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에 따른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
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(안 제5조
의2 신설).
- 나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
무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(이하 “투개표사무인력”이라 함)의
수를 추계하여 이를 지원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
여야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투개표사무인력의 명단을 제출받고 이를 취
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(안 제146조의2 신설).
- 다.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, 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, 개
표사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투개표사무인력 중에
서 위촉하도록 함(안 제146조의3, 제148조의2 신설 등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官公署 기타 公共機關”을 “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기관”으로, “우선적으로”를 “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투표 및 개표 사무) 이 법에 따른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.

제146조의2를 제146조의3으로 하고,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6조의2(투개표사무인력 지원 등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(이하 “투개표사무인력”이라 한다)의 수를 추계하여 필요한 투개표사무인력을 지원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
1.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
2.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
3.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개표사무원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개표사무인력의 지원을 요청

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투개표사무인력의 명단을 제출받고 이를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투개표사무인력의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투개표사무인력의 명단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투개표사무인력 지원 요청, 행정안전부장관의 투개표사무인력 명단 제출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6조의3(중전의 제146조의2)제2항 중 “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”을 “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(이하 “투표관리관등”이라 한다)은 제146조의2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투개표사무인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투표관리관등은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④ 투표관리관등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 또

는 사전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한 지시·감독을 할 수 있다.

⑤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법규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
3.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47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48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0항 및 제11항”을 “제1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사전투표소의 설치·공고·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”을 “사전투표소의 설치·공고·통보”로 한다.

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8조의2(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) 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 마다 제146조의2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투개표사무인력 명단을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한다.

③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6조의2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위촉한다.

④ 투표사무원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⑤ 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6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.

제174조제2항 중 “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”를 “제146조의2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개표사무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6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.

제261조제7항제2호사목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항제2호바목 중 “제147조제9항, 제148조제3항”을 “제148조의2제2항 및 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투개표사무인력 지원 요청에 관한 적용례) 제1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, 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,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투개표사무인력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2.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

3.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개표사무원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개표사무인력의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투개표사무인력의 명단을 제출받고 이를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투개표사무인력의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투개표사무인력의 명단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투개표사무인력 지원 요청, 행정안전부장관의 투개표사무인력 명단 제출, 그 밖에 필요

제146조의2(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) ① (생략)
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,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.
③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.

<신설>

<신설>

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6조의3(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(이하 “투표관리관등”이라 한다)은 제146조의2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투개표사무인력-----
-----.
③ 투표관리관등은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④ 투표관리관등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한 지시·감독을 할 수 있다.
⑤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第147條(投票所의 設置) ① ~ ⑧
(생략)

⑨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
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
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에
규정된 국가공무원과 「지방
공무원법」 제2조에 규정된
지방 공무원. 다만, 일반직공
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·보
호·검찰사무·마약수사·출
입국관리·철도공안 직렬의
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
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

1. 법규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
른 사무를 수행한 경우

2.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선거
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불응하
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
우

3.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
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
정되는 경우

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

第147條(投票所의 設置) ① ~ ⑧
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을 제외한다.

2. 각급학교의 교직원

3. 「은행법」 제2조의 규정에
의한 은행의 직원

4.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
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

5.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
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

⑩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
의 기관·단체의 장이 선거관
리위원회로부터 투표사무원의
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
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⑪ (생략)

제148조(사전투표소의 설치) ①

· ② (생략)

③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
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
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
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
두어야 한다.

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
한·사용협조, 설비, 사전투표
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

<삭 제>

⑪ (현행과 같음)

제148조(사전투표소의 설치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④ -----

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
까지,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
한다.

⑤ (생략)

⑥ 사전투표소의 설치·공고·
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
촉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
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
한다.

<신설>

-----제11항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사전투표소의 설치·공고·
통보-----

-----.

제148조의2(투표사무원 및 사전
투표사무원) ① 구·시·군선
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을
때 마다 제146조의2제3항에 따
라 송부받은 투개표사무인력
명단을 읍·면·동선거관리위
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
는 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
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
라 송부받은 투개표사무인력
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한다.

③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
는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
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6조
의2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투
개표사무인력 중에서 사전투표

第174條(開票事務員) ① (생략)

②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.

③ 제147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·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

① ~ ⑥ (생략)
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

사무원을 위촉한다.

④ 투표사무원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⑤ 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6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.

第174條(開票事務員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제146조의2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-----

③ 개표사무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6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.
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

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(생략)
- 2.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

당하는 者

가. ~ 마. (생략)

사. 제146조의2제3항이나 제147조제10항(제14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

아. (생략)

- 3. ~ 6. (생략)
-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1의2. (생략)

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

가. ~ 마. (생략)

바. 제147조제9항, 제148조제3항 또는 제174조(개표사무원)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·사전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의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아. (현행과 같음)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⑧ -----

1. 1의2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제148조의2제2항 및 제3

항-----

<p>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·유기하거나 해태한 자</p> <p>2의2. ~ 6. (생략)</p> <p>⑨ ~ ⑫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의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~ ⑫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